

2022년 하반기 체험형 인턴 채용 공고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서, 승강기 안전을 선도할 창의적이고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2022년 8월 18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1. 채용 개요

채용직급	채용분야	채용인원	비 고
체험형 인턴	• 일 반	81	가산점 부여는 '4. 가산점' 참고
	• 지역인재(울산·경남) ¹⁾	39	
	• 장애인	5	
	• 국가유공자	5	
합 계		130 ²⁾	

1) 최종 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울산·경남지역 소재의 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붙임 1 참고

2) 채용분야 간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채용분야 중 특정 분야의 합격인원이 미달되는 경우 우선순위(1순위:지역인재, 2순위:일반, 3순위:국가유공자, 4순위:장애인)에 따라 다른 채용분야의 예비합격 인원을 추가 채용할 수 있음

※ (예시) 국가유공자 최종 4명 합격(1명 부족) → 지역인재 1명 추가합격

2. 근무조건

채용직급	근로시간	근무기간	보수(月)
체험형 인턴	주 40시간 (주 5일, 8시간/일)	'22. 10. 1. ~ 12. 31. (3개월)	월급 195만원 (세전 총 액, 4대보험·중식비 포함)

※ 위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공단 취업규칙에 따르며 근무조건은 대내·외 환경 변화 및 공단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응시자격, 담당업무 및 근무장소

가. 응시자격

- (필수)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공단 인사규정 제1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붙임 8 참조)
- 채용예정일('22. 10. 1.)부터 근무 가능한 자
- 병역필(임용일 전 전역가능자 포함) 또는 면제자(비해당자)
- 연령 제한 없음(단, 임용예정일 기준 공단 정년(62세)에 도달한 자 제외)
- 최종학력 제한 없음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의 예외) 해외체류자,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자가 격리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임용(예정)일을 유예할 수 있음. 단, 이 경우 예비합격자 운영기간내(~ '22. 11. 30.) 승인함

나. 담당업무 및 근무장소 세부내역

채용분야	담당업무 ¹⁾	근무장소 ²⁾
체험형 인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보조 및 행정지원 등 - 승강기 사고·고장 조사 등 지원 - 승강기 홍보 지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단본부(진주) • 승강기안전기술원(거창) • 지역사무소(전국)

1) 채용 예정분야 NCS 기반 직무기술서 : 붙임 3 참조

2) 사택 등 정주여건 제공 불가

4. 가산점

구분	우대대상	대상전형	가산점(만점 기준) ¹⁾	비고
공통	한국사자격증	면접형	1급 : 3%, 2급 : 2%, 3급 : 1%	붙임 2 참고
법정	장애인		10%	
	국가유공자		5% 또는 10%	
	의사상자		5% 또는 3%	
사회적 취약계층	저소득층		5%	
	다문화 가족		5%	
	북한이탈주민		5%	

1) 가산점의 합은 최대 10%까지 적용

5. 제출서류 ※ 진위 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되며 심사위원 등에게 제공되지 않음

구 분	제출서류
서류전형 합격자 ¹⁾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 수) 국민취업제도 참여 확인서 1부 •(필 수) 면접전형 응시를 위한 본인확인용 서류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본인 증명사진(jpeg 이미지 파일) •(해당자) 가산점 우대대상 증빙서류 사본 1부
면접전형 참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에 한함)
최종합격 예정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단 내규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19조를 따른 서류 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분확인서류, 채용신체검사서²⁾ 등 개별 안내 예정

1)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서류는 9.7.(수)부터 9.14.(수)까지 채용홈페이지에 제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확인서 출력방법> ※ 일경험프로그램 사전교육 필수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kua.go.kr)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신청서/결정서/통지서 출력

2) 채용신체검사 수검 비용은 공단이 부담하며 비용처리 방법은 별도 안내 예정

6. 전형절차

전형단계	주요내용	일 정
가. 공고·접수	• 홈페이지, 알리오 등	'22. 8. 18.(목) ~ 8. 31.(수)
	• 온라인 접수	
나. 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2. 9. 7.(수)
	• 제출서류 채용홈페이지 제출	'22. 9. 7.(수) ~ 9. 14.(수)
다. 면접전형	• 집단면접	'22. 9. 19.(월)
라. 최종합격자 발표	• 최종합격자 개별통보 및 공고	'22. 9. 22.(목)
마. 이의신청	• 이의신청 접수	'22. 9. 22.(목) ~ 10. 6.(목)
바. 임용	• 체험형 인턴 임용	'22. 10. 1.(토)

※ 상기 내용과 일정은 공단 사정 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 공고·접수

- (채용공고) 공단 홈페이지 '채용공고' 게시판, 잡알리오 '임직원 채용 정보 현황' 등을 통해 공고
-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https://koelsa.incruit.com>)를 통하여 응시원서 작성 후 온라인 접수

나. 서류전형

- (합격요건) 응시자격을 충족한 응시자 중 채용인원의 2배수 내 선발
- (불합격)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자
 - 블라인드 채용 위반, 공란, 동일내용 반복, 타사 지원내용, 항목별 100자 미만 작성 등
- (합격발표) '22. 9. 7.(수) 예정, 채용홈페이지 및 잡알리오 게시
 - ※ SMS 등을 통한 개별안내 병행

다. 면접전형

- (전형일자) '22. 9. 19.(월) 예정
- (전형장소)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개별 안내 예정
- (평가요소) ① 직업관(직업윤리) ② 전문성 및 업무수행능력
 - ③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④ 발전가능성 ⑤ 고객지향성 및 협력성
- (합격자 결정) ① 평가요소별 산술평균값을 집계하여 ② 가산점을 포함한 면접전형 평점(산술평균값,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이 6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③ 고득점 순위로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선발
 - ※ (가산점 부여기준)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만 부여
 - ※ 서류전형 점수를 반영하지 않음
 - ※ 동점자의 경우, 직업관(직업윤리), 전문성 및 업무수행능력, 예의·품행 성실성, 발전가능성, 고객지향성 및 협력성 순 고득점자를 합격자로 선정

라. 최종합격자 발표

- (합격발표) '22. 9. 22.(목) 예정
- (발 표 처) 채용홈페이지 및 잡알리오 게시(개별안내 병행)

마. 이의신청 접수

- (운영목적) 채용비위로 인한 피해자 구제
- (운영기간) '22. 9. 22.(목) ~ 10. 6.(목),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 (제출방법) 채용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 ※ (신청내용) 채용전형별 심각한 오류에 관한 정량적 사항으로서 합격과 불합격에 영향이 있다고 인정될만한 사안
 -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가 아닌 경우, 이의제기 내용검토 및 답변 처리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1.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등
2.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3.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바. 임용

- (임용일자) '22. 10. 1.(토) 예정
 - ※ 예비합격 제도 운영기간 : 임용일 ~ '22. 11. 30.(수)

7. 기타 채용관련 안내

가. 블라인드 채용

- 입사지원서 작성 시 사진, 학교명, 생년월일, 성별 기재란 없음
 - ※ 단, 면접전형의 본인확인을 위해 생년월일 및 증명사진 수집 예정
- 이메일 기재 시 학교명, 특정 단체명이 드러나는 메일 주소 기재 금지
- 자기소개서에 성별, 가족사항, 출신지역, 학력, 군경력 등 일체 기재 금지
- 온라인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성명, 연락처, 등 개인 인적사항 및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를 심사위원회에 제공하지 않음

나. 채용서류의 반환

- (대 상 자) 2022년 하반기 체험형 인턴 채용의 면접전형 응시자
 - ※ 채용서류 반환은 '5. 제출서류'에 한하며, 온라인으로 제출한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등은 반환 대상이 아님
- (운영기간) '22. 10. 1.(토) ~ 10. 31.(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
- (신청방법) 채용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 (발송방법 및 일자) 개별통보
- (기타사항) 지정 기간 내 반환신청이 없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

다. 감염병 관련 조치사항

- 면접전형 시 감염병 예방절차 준수 및 개인위생 관리 철저
- 시험장 입구에서 발열체크, 손 소독, 마스크 착용 확인 후 입실
- 다음의 대상자는 면접전형 응시 불가
 - 환자, 의사환자* 및 감염병 의심자 등 현재 입원치료통지서(또는 자가 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중인 자
 - * 환자의 접촉자 중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전형 당일 유증상자는 응시제한 조치
 - 별도 지정된 시험실과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며, 면접 종료 후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조치
 - ※ 상기 코로나19 관련 안내사항은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장애인응시자 편의지원

- (지원내용) 채용전형 전반(면접장 배정 등)
- (신청방법) 채용홈페이지, 유선전화 등
 - 사전신청을 못한 경우 현장 지원요청도 가능함
- (신청기간) 채용전형 기간 내

마. 기타사항

- 제출을 완료한 입사지원서와 자기소개서(이하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수정불가
- 응시원서는 국문(입력 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영문 가능)으로 작성
- 응시원서 접수 시 **입력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응시원서 허위작성, 증빙서 위·변조 및 각 전형단계에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공단내규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18조를 적용, 불합격처리 하고 향후 5년간 입사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 채용이후 부정입사(결격사유 해당 등)가 확인되는 경우 임용이 취소 될 수 있음
- 서류전형은 지원자가 입력한 내용만으로 합격자 사정을 하며, 각종 증빙서류는 ‘5. 제출서류’에 게시된 대로 접수해야 함
 - 증빙서류는 응시자격·가점 적용대상 여부 확인만을 위해 활용하며 제출 하지 못할 경우 해당사항은 인정되지 않음
- 접수마감일은 다수의 동시접속 등으로 인하여 접수가 어려울 수 있음
- 면접전형 시 본인의 수험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한정)을 지참해야 하며 학생증 등 기타 신분증으로는 응시할 수 없음
 -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은 ‘주민 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제출
 - 수험표 출력은 각 전형 합격자에 한해 출력 가능
- 채용분야별·단계별로 채용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모집인원을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이 되었어도 ‘건강검진’, ‘자격증 등 제출서류’ 등에 이상이 있을 경우 합격을 무효로 할 수 있음
- 채용관련 인사 청탁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며, 당해시험 무효 및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입사지원을 제한함

- 채용비리 발생 시에는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가이드라인」(붙임 2)에 따라 시험기회를 부여함
- 최종합격이 확정된 이후에는 재학 및 재직여부와 관계없이 정상출근이 가능하여야 함
- 상기에 없는 기타 문의사항은 채용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질의바람

- 붙임
1. 이전지역인재 설명자료
 2. 가산점 부여기준
 3.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가이드라인
 4. NCS 직무 설명자료
 5. 공정채용 확인서(서식)
 6. 이의신청 양식(서식)
 7.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서식)
 8. 채용 결격사유

이전지역인재 설명자료

1. 이전지역인재의 개념

공공기관이 이전한 광역시·도에 소재한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이하 “이전지역 학교”라 함)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으로, **우리 공단 응시자는 경상남도 및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2

적 용 예 시	
경남·울산 지역 고교 졸업(예정)자	대상 ○
경남·울산 지역 고교 졸업, 타 지역 대학 재학/휴학/중퇴자	대상 ○
경남·울산 지역 고교 졸업, 타 지역 대학 졸업(예정)자	대상 X
타 지역 고교 졸업, 경남·울산 지역 대학 재학/휴학/중퇴자	대상 X

※ 대학졸업예정자는 4년(=8학기, 전문대학의 경우 2년=4학기)이상 등록하고, 최종 학기 수강 신청학점을 포함해서 졸업학점에 도달된 자로서, 재학 중인 학교의 학칙에 따라 졸업 예정자로 인정되어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야 하고, 이전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시점에 제출할 수 있어야함

2. 이전지역 학교

- ①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하며,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제외), 기술대학, 각종학교 등의 본교
 -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역대학은 이전지역 학교에 포함
- ② 「고등교육법」 제24조에 따른 분교 및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지방캠퍼스(이원화 캠퍼스)
 - * 본교와 다른 이전지역에 분교 및 이원화 캠퍼스가 위치한 경우, 해당 캠퍼스가 위치한 시·도의 지역인재로 포함되며, 이 경우 이전지역에서 대학교를 졸업, 졸업예정인 것으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 이전지역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이원화 캠퍼스 중 본교가 이전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이원화 캠퍼스도 본교가 위치한 시·도의 지역인재로 포함

- ③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 ④ 특별법으로 설치된 다음 학교는 졸업 후 임용이 보장되고 일정기간 복무의무를 지며 국고에서 학비를 부담하므로 소재지에 관계없이 제외
 - 가 「경찰대학 설치법」에 의한 경찰대학(경기)
 - 나 「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육·해·공군사관학교(서울·경남·충북)
 - 다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대전)
 - 라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육군 제3사관학교(경북)
- ⑤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 외국학교 및 지방에 있는 외국학교의 분교는 제외

3. 이전지역인재

- ① 다음의 이전지역대학 졸업(예정)자
 - 가 「고등교육법」상의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소정의 학교와 과학기술 대학을 졸업한 경우
 - 나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경우 이전지역에 소재한 소정의 학교에서 전 기간을 수강하고 졸업한 경우
- ② 이전 지역인재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아래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또는 열거된 학력을 보유한 사람은 해당 학력을 제외한 최종 학력이 이전지역 학교일 경우
 - 가 「고등교육법」, 특별법 등 교육관계 법령에 규정된 대학원
 - 나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사이버대학
 - 다 「평생교육법」에 규정된 평생교육기관
 - 라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독학학위 취득자
 - 마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학위 취득자
- ③ 학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가 수도권 소재 학교 및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소재 학교가 이전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하는 시점 이전 졸업자는 이전 지역인재에서 제외
 - 나 지방소재 학교가 수도권으로 이전하였거나 이전지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하는 시점 이후 입학자는 수도권 또는 이전지역 밖의 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것으로 보아 이전 지역인재에서 제외

[붙임 2] 가산점 부여기준

가산점 부여기준

구 분	가산점	근 거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1조,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1호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전몰군경, 순직군경	10%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의 배우자	5%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5%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10%		
순국선열의 유족 및 애국지사, 애국지사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일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애국지사의 가족, 애국지사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손자녀의 자녀 1명	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2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10%		
5·18민주화운동희생자,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3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		
5·18민주화운동희생자의 배우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10%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유족등,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4조,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4호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의 유족등,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형제자매 중 1명(그를 지정하는 취업지원 대상자인 부 또는 모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5%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치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5호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또는 유족 중 배우자, 수당지급 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또는 유족 중 자녀	5%		

국가 유공자*

구 분		가산점	근 거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7호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배우자	5%	
장애인		1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6호
의사상자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의상자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8호
	의상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3%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9호
북한이탈주민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10호
다문화가족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11호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을 갖춘 사람		1급 3%, 2급 2%, 3급 1%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12호
그 밖에 공단 업무수행 상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변호사 등의 전문자격 및 박사학위 이상의 학위에 대해 인사위원회에서 정함)		3% 이내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14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유공자로서 취업지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응시자가 선택한 하나의 가점만을 부여한다.

[붙임 3]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가이드라인

피해자 구제 가이드라인

1. 근거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7조제1항
-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18.5, 기획재정부)

2. 내용

- (피해자) 타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다음 채용단계 응시기회 제약을 받은 자
 - (피해자 특정 가능 시)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다음 채용단계 채용시 기회 부여
- ※ 예: 면접결과 합격대상자로 포함되었으나, 점수조작 등으로 최종 탈락한 경우

구 분	내 용
서류단계 피해	해당 피해자 필기전형 응시 기회 부여
필기단계 피해	해당 피해자 면접전형 응시 기회 부여
면접단계 피해	해당 피해자 즉시 채용

- (피해자 특정 불가 시) 피해자 그룹으로 특정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
- ※ 예: 부정채용 사실 자체는 확인되었으나, 응시자 개인별 피해여부에 대한 직접적 인과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구체적인 피해자 특정이 곤란한 경우

구 분	내 용
서류단계 피해	피해자 그룹 서류전형 재실시
필기단계 피해	피해자 그룹 필기전형 재실시
면접단계 피해	피해자 그룹 면접전형 재실시

※ 단계별 피해자 구분이 어려운 경우 서류전형 재실시

[붙임 4] NCS 직무 설명자료

직무기술서

NCS 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02. 경영·회계· 사무	02. 총무·인사 03. 재무·회계	01. 총무 02. 회계	01. 총무 01. 회계·감사
채용분야	행정분야			
공단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승강기 시설 이용자인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승강기 검사, 인증, 진단·컨설팅, 안전성 평가, 연구개발 등 안전관리 사업 및 체계적인 사고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핵심책무 (능력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무) 07 업무지원, 08 총무문서관리, 10 총무보안관리 ○ (회계·감사) 01 전표관리, 02 자금관리, 03 원가계산, 04 결산관리 			
직무수행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무) 총무는 조직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산의 효율적인 관리, 임직원에 대한 원활한 업무지원 및 복지지원, 대·내외적인 회사의 품격 유지를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일이다. ○ (회계·감사) 회계·감사는 기업 및 조직 내·외부에 있는 의사결정자들이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며, 제공된 회계정보의 적정성을 파악하는 일이다. 			
필요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무) 인장관리규정, 출장관리규정, 증명서 종류(용도, 확인사항), 표준계약서 작성, 문서관리규정의 제·개정 방법, 복리후생 관련 법규, 보안 규정, 문서 분류 방법, 문서관리 프로세스, 문서 작성법 ○ (회계·감사) 회계상 거래와 일상생활에서의 거래를 구분하는 지식, 입금·출금·대체 전표에 대한 지식, 입금·출금·대체 전표에 대한 지식, 증빙서류 종류 			
필요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무) 정보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재고관리 능력, 협상력, 문서 분류 기술, 문서작성 기술 ○ (회계·감사) 거래를 장부에 기업·분석하는 능력, 증빙 서류를 처리하는 능력, 법인카드 관리 능력 			
직무수행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무) 보안의식 준수, 공평한 원칙 준수, 내부고객에 대한 서비스 태도, 고객 서비스 마인드, 윤리의식 ○ (회계·감사) 전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하려는 태도, 신속·정확성, 증빙서류 관리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태도 			
필요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워드프로세스, 컴퓨터활용능력,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전산세무, 전산회계 			
직업기초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인관계능력, 수리능력, 조직이해능력, 의사소통능력, 직업윤리, 문제해결능력 			
참고사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ww.ncs.go.kr → NCS 학습모듈 검색 → NCS능력단위 정보 확인 			

공정채용 확인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공단 채용 응시자 본인의 확인을 받고자 하오니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본인과 친인척 관계(배우자 및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인 사람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있음 없음)

→ “있음”에 체크한 경우 아래 2·3·4항 모두 작성

2. 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 관계

본인과의 관계	친인척 직원 성명	친인척 직원 소속	비고

3. 본인과 본인의 친인척은 이번 채용과정에서 “직접” 또는 “친인척이나 지인을 통하여”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있습니까? (있음 없음)

4. 재직 중인 친인척 관계의 직원이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거나 행사하였다고 (생각함 생각하지 않음)

- 위 기재사항은 모두 사실이며, 허위로 작성하거나 본 채용에 대하여 본인 및 본인의 친인척의 채용비리(채용 개입 및 채용에 부당한 영향 등) 사항이 확인 될 경우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근로계약이 해지됨을 확인합니다.
- 또한 이 확인서 작성 시에 인지하지 못한 친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본인 _____ (인 또는 서명) 생년월일 : _____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 6] 이의신청 양식(서식)

채용불합격자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small>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7일</small>
신청인	성명	수험번호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이의신청 내용 (구체적으로)	(신청이유)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사장 귀하

이의신청 처리 예외 사유

- 1) 채용시험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등
- 2) 시험출제·평과관련자 개인정보, 지적재산권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 3)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붙임 7]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서식)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사장 귀하

[붙임 8] 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또는 제83조에 해당하는 비위면직자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공공기관 임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와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